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2. 6. 30

제안자 : 柳柄魯 議員外 5人

1. 제안이유

현행조례 제3조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의전용 차량 취득승인에 따른 차량기사 정원 조정을 하기 위함이며 개정조례(안)의 제4조 직원의 지원 요청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업무량의 폭주를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골자

-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14명으로 조정
- 직원의 지원 요청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사무과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대구직할시 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13명”을 “14명”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사무직원의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 상당급 직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시행규칙) 생략</p>	<p>제3조(사무직원의정수).....14명.....</p> <p>제4조(직원의지원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